

## 구매계약조건

### 1. 정의

- A. "장비"란 해당 장비 구성 또는 각 장비 모델에 관한 장비 사양 혹은 당사자간에 서면으로 합의한 장비 사양에 따라 요구되는 산출량을 생산하는 업그레이드 및 그 변환도구를 포함한 시스템을 의미한다.
- B. "물품(들)"이란 장비를 포함하여 공급자가 제공하는 물품을 의미한다.
- C. "유해물"이란 위험한 물건, 화학물질, 오염물질, 물질, 오염원 및 관련 지역, 주, 국가의, 또는 국제적인 법, 규제, 기준에서 유해하다고 정의한 기타 물질, 혹은 이를 포함하는 물질을 의미한다.
- D. "주문서"는 인도할 구체적인 물품 및 승인정보를 기재한 MEMC의 문서이다.
- E. "승인"은 부칙B에 기재된 물품을 공급자가 제공하도록 MEMC가 승인함을 의미한다. 승인은 공급자에게 보낸 주문서에 포함되어 있다.
- F. "부품(들)"은 MEMC가 공급자 또는 제3자로부터 조달한 소모품 및/또는 비소모적인 부품을 의미한다.
- G. "사양"은 구매할 물품에 대해 합의된 사양을 의미한다.

### 2. 계약조건

본 조건은 첨부된 주문서에 기재된 물품, 서비스의 구매에 적용된다. 첨부되거나 참조한 부록과 문서를 포함하여 주문서의 구체적인 조건, 규정과 본 조건에 명시된 표준 조건 간에 상충이 있는 경우, 본 조건들이 적용된다. 본 조건은 MEMC가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는한 포기, 수정할 수 없다.

### 3. 가격결정 및 감사

- A. 주문서에 명시된 가격들은 물품배송기간 동안 고정적이거나 인하되며 모든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세금, 부가가치세 및 물품, 서비스의 제공, 이전에 대해 정부가 부과하는 모든 형태의 직접세, 간접세를 포함한다.
- B. MEMC에게 청구하는 가격은 해당 물품에 관한 공급자가 고객에게 청구하는 최저가격 또는 그와 동등한 가격이다. 만일 공급자가 본 조건에 명시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고객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공급자는 청구되지 않은 물품 및 해당 물품에 대한 추후에 발행할 청구서의 가격을 위와 같은 가격으로 인하한다. '주문제작 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의 경우, 본 조에 따른 가격비교를 위하여, 해당 물품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공급자가 판매하는 유사제품과 비교하여 해당 물품에 일반적인 비용요소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관련 물품이 형태, 적합성, 기능, 생산과정 등의 유사한 속성이 있거나 당사자간에 합의된 구체적인 비교기준이 있는 경우에 비교가능하다.

- C. 판매/이용세, 거래세(transaction privilege tax), 총수입세(gross receipts tax), 세금, 관세, 부과금, 정부 부담금과 같은 모든 세금은 공급자의 청구서에 별도로 명시되어야 한다. MEMC가 면세에 관한 충분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한, 공급업자는 관련 세무당국에 모든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만일 MEMC가 세액을 공제하거나 원천징수하여 관련 세무관서에 세금을 지불하지 않고는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법률상 금지되는 경우, MEMC는 법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남은 잔액을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MEMC는 공급자에게 원천징수된 금액을 상환하지 않는다. 공급자가 세금 징수 및 지급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관할지역에 물품이 인도되는 경우 공급자는 단독적으로 관련 세무당국에 세금을 지불할 책임을 부담한다. 공급자가 MEMC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추후에 세무당국의 감사를 받는 경우, MEMC는 제재금이나 이자에 대한 상환없이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각 당사자는 각자의 소득세 및 영업, 직업관련 세금 등 총매출액에 기인한 세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 D. MEMC의 사전 서면승인없이 주문서에 기재된 비용을 제외한 추가적인 비용은 MEMC의 사전 서면 승인없이 상환되지 않는다.
- E. MEMC는 본 규정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급자의 기록을 검사하며, 감사를 실시할 권리를 가진다. MEMC의 재량 혹은 공급자의 서면 요청에 따라 MEMC의 비용으로 독립적인 3자가 감사를 실시한다. 만일 공급자가 어떠한 위반행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공급자는 감사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와 관련된 모든 비용 및 감사결과 불일치하는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감사는 감사결과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제3자가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MEMC에게 공급자의 본 조건의 의무불이행에 대해서만 보고하여야 한다.

### 4. 청구 및 지급

- A. 할인된 금액은 다음 중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즉시 계산한다: (i) 물품의 인도일; 또는 (ii) MEMC가 적절히 작성된 청구서 원본을 수령한 날. MEMC가 수표를 우편발송하거나 EDI 이체시 지급된 것으로 본다. MEMC는 그 선택에 따라 60일 이내에 지급하고 전체금액에서 2%를 할인받거나, 청구서 원본 수령일이나 물품 인도일 중 늦은 날짜로부터 12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 B. 청구서 원본은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주문서 번호, 라인 물품 번호, 인도된 물품 목록 및 각 인도일자, 완전한 청구지 주소, 부수적인 물품 설명, 수량, 단위당 가격, 총금액, 및 관련 세금 및 부과금. MEMC의 지급은 수용을 의미하지 않는다.

- C. 공급자는 물품 관련 서비스의 이행을 위해 사용한 공급자의 구매처, 하수급인 등에 대한 지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MEMC를 면책하여야 한다.
- D. 공급자는 물품 배송일로부터 늦어도 180 일 이내에 MEMC에게 대금청구를 하여야 한다. 위 기간 이후 제출된 청구서에 대하여 MEMC는 지급의무가 없다.

**5. 해지**

- A. MEMC는 30 일전에 공급자에게 서면통지함으로써 언제든지 주문서, 승인 또는 그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공급자가 이러한 통지를 수령하면, 통지에 달리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에 승인된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그 공급자, 하수급인들에게도 관련작업을 중단하도록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B. 아직 제공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 해지 수수료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MEMC는 공급자가 이미 제공하고 승인하였으나 청구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물품에 관하여 지급 책임을 부담한다. 공급자에 대한 지급 후 MEMC는 지급대상이 된 모든 작업, 재료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C. 본 조에 따른 지급의무를 부담하기에 앞서 MEMC는 진행 중인 공급자의 작업을 검사할 수 있고, 청구서 대금 지급 전에 관련된 모든 문서를 검사할 수 있다.

**6. 사양, 식별 및 오류목록**

- A. 공급자는 MEMC의 사전서면 승인없이 MEMC가 구매한 물품의 사양을 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
- B. 공급자는 본 조건에 따라 공급된 물품을 위한 구성관리 및 추적시스템을 제공하는데 협력하여야 한다.
- C. 공급자는 각 물품에 대한 오류 목록을 MEMC에게 제공하고, 물품 관련 새로운 오류 발견시 MEMC에게 즉시 서면통지하여야 한다.

**7. 기한 설정 및 승인**

- A. 공급자는 승인서에 기재된 물품들을 즉시 인도하여야 한다.
- B. MEMC는 서면통지로서 승인된 물품의 일부에 대한 인도를 유보하도록 할 수 있으며, 위 통지는 공급자가 수령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유보된 승인에 대하여 MEMC는 제 5 조에 따라 합리적인 시간 내에 새로운 기일을 설정하거나 해지한다.
- C. MEMC가 제공한 예측치는 오직 계획수립을 위한 목적이며 MEMC의 승인 혹은 기타 MEMC가 어떠한 의무를 부담함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MEMC는 개별 물품에 관한 구체적인 승인이 포함된 주문서에 해당 물품이 명시되기까지 물품 구매에 관한 의무가 없다.

**8. 보증**

- A. 공급자는 다음에 관하여 진술, 보증한다:

- (i) 제공된 모든 물품은 설계, 자재, 기술상 하자가 없고, 의도된 목적에 부합하며, 주문서에 명시된 설명서, 사양, 성능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 (ii) 공급자는 관련 물품을 MEMC에게 제공하는데 필요한 권리, 권한, 이익이 있으며 이러한 물품은 유치권이나 기타 실정된 부담이 없으며, 제 3 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B. MEMC가 구매한 모든 물품은 공급자의 공장에서 배송하기 전에 검사 및 “소스 검사”시험의 대상이 된다. 소스 검사는 당사자간에 서면으로 달리 합의한 경우가 아닌한, 사양에 제시된 소스검사 조건에 따른다. 공급자는 소스 검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물품들이 소스 검사를 통과하고, 모든 측면에서 사양에 명시된 조건에 부합함을 확인한 서면을 MEMC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MEMC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스 검사에 참여할 수 있다. 공급자의 사업장에서 검사, 시험을 하는 경우, 공급자는 추가비용없이 MEMC에게 적절한 시설 및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i) 공급자의 사업장의 소스 검사나 시험에도 불구하고, MEMC가 구매한 모든 물품은 MEMC가 그 사업장에서 해당 물품을 최종적으로 수용하기 전까지 MEMC의 검사 및 자격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당사자간에 별도로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은 한, 최종 수용조건은 사양에 명시되어 있다. 사양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MEMC가 거절한 물품들은 공급자의 위험부담, 비용으로 공급자에게 반환할 수 있으며, MEMC의 선택에 따라 해당 물품은 즉시 보수 또는 대체되어야 한다.
- C. MEMC의 수용 및/또는 검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추후에 발견되는 하자나 불일치의 시정에 대해 MEMC가 그 권리나 구제조치를 포기하였음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 (i) 공급자는 (i) MEMC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즉시 불일치 부분이나 기술상 하자가 있는 부분을 시정하여야 한다; 또는 (ii) MEMC의 선택에 따라 공급자는 해당 물품을 즉시 보수, 대체하거나 기지급된 대금을 환불하고, (iii) MEMC에게 상기 보증의 위반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수적이고 결과적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배송비용 및 운송 중 하자있거나 기준에 불합치하는 제품의 멸실에 대한 모든 부담을 진다.

**9. 기밀 유지 및 홍보**

- A. 당사자는 상대방의 기밀정보나 자료에 접근하거나 접근이 허용될 수 있다. 또한 공급자는 MEMC를 위하여 새로운 정보와 자료를 개발하거나 MEMC에게 물품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정보를 개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당사자간에 사전에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한, 생성시점부터 MEMC의 기밀정보가 된다. 단, 수령인이 기밀임을 합리적으로 알 수 있도록 이러한 정보와 자료에 표시되거나, 제공시점으로부터 48 시간 내에 해당 정보와 자료가 ‘기밀’이라는 서면통지를 수령인에게 보내야 하며, 각

당사자는 본 규정, 당사자 간 법인비밀유지계약("CNDA") 및 MEMC와 공급자 간에 체결된 기타 비밀유지계약의 조건에 따라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 9 조의 규정이 CNDA와 상충되는 경우, 모든 경우에 CNDA의 조건이 우선한다. 각 당사자는 최소한 이러한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정보를 공개하며, 권한없는 공개를 막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고, 공개하지 않은 당사자의 귀책없이 해당 정보가 적법하게 공개될 때까지 유사한 속성을 가진 자신의 정보를 취급하는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 해당 정보를 취급하여야 한다. MEMC의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공급자의 직원들은 시설에 입장하기 전 별도의 접근계약에 서명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공급자는 MEMC를 위하여 생성된 기밀정보를 MEMC 이외의 자를 위해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B. 당사자들은 상대방의 구체적인 서면 동의없이 주문서의 존부, 그 내용, 주문서에 따라 생성된 법률관계에 대해 제 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서면동의없이 상대방의 이름, 상표를 광고, 브로슈어, 배너, 편지, 명함, 참조리스트, 유사 광고물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0. 지적재산에 관한 면책**

- A. 본 항에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급자는 MEMC 혹은 MEMC 고객이 MEMC의 물품이나 그 물품을 사용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MEMC의 제품을 사용, 판매함에 기인하여 발생한 특허, 저작권, 영업비밀, 상표, 마스크 워크 등의 지적재산권의 실제 침해 혹은 침해 주장으로 인한 비용(합리적인 범위의 변호사 비용 포함), 손실, 손해, 채무로부터, MEMC가 공급자에게 어떤 사양서를 제공하였는지와 무관하게, MEMC와 그 고객들을 면책하여야 한다. MEMC는 공급자에게 이러한 주장, 요구에 대해 통지하고 그 방어나 합의에 공급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청구나 기타 행위로 가처분이 내려진 경우, 공급자는 그 비용과 MEMC의 선택에 따라 다음 중 한가지를 이행할 수 있다: (i) MEMC 또는 MEMC의 고객이 계속하여 물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권리를 확보함; (ii) 지적재산권 등의 침해가 없는 물품으로 교환함; (iii) 물품을 개조하여 지적재산권 등의 침해가 없도록 함; 또는 (iv) 공급자에게 반환되거나 파괴된 물품의 가액만큼 MEMC에게 환불함.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와 무관하게, 공급자는 가처분 효력발생일 현재 MEMC가 주문하고 공급자가 수용한 주문을 충족하기 위해 MEMC가 대체품 조달에 들인 재작업 비용 및 추가적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상기 면책조항은 당사자간에 별도로 합의하지 않은 한, MEMC의 구체적인 설계에 따라 맞춤형된 물품이 생산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B. MEMC는 물품의 생산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양을 공급자에게 제공하고 이에 따른 것을 요구하였으며, 그러한 사양을 따르지 않았으면 침해주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제 3자의 정당한 침해주장에 기인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으로부터 공급자를 방어, 면책한다.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급업자가 생산 사양이 제 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거나, 합리적인 실사를 통해 이를 알았어야 하는 경우, MEMC는 본 조건상 공급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 C. 상기 규정은 제 3자의 지적재산권 주장에 관한 MEMC와 공급자 간의 모든 총체적인 의무와 구제책을 명시한다.

**11. 유해물**

- A. 만일 본 조건에 따라 제공된 물품이 유해물을 포함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경우, 공급자는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공급자와 그 직원들이, 유해물의 취급, 운송, 사용을 포함하는 물품의 설계 및/또는 이용과 연관된 속성과 위험성을 이해함을 진술하고, 보증한다. MEMC의 사업장에 유해물을 운반하기 전에, 공급자는 MEMC의 현장 환경/보건/안전 기구로부터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급자는 다음과 관련된 공급자 혹은 그 계약 당사자들의 행동에 기인한 책임을 완전히 부담하며, MEMC를 면책한다: (i) MEMC에게 유해물을 포함하거나 이를 구성하는 물품을 제공함; 및/또는 (ii) 물품과 관련된 서비스를 MEMC에게 제공하는데 있어 유해물의 사용.
- B. 공급자는 MEMC가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MEMC에게 재료안전 데이터 시트 및 기타 필요한 문서들을 적절한 시간 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 C. 공급자는 MEMC에게 제공된 물품이 MEMC의 환경, 안전 지침과 절차에 부합하고, 관련 법률에 정의된 오존파괴물질 포함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생산되지 않았음을 보증한다.

**12. 보험**

- A. 본 조건에 따라 공급자가 부담하는 공급자의 채무, 의무, 면책 사항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공급자는 그 비용으로 사고당 최소 USD\$1,000,000.00의 보상액 및 (1) 공급자의 사업과 관련된 계약이나 약정에 따른 의무이며, (2) 공급자의 물품이나 작업에 기인한, 상해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MEMC가 수용할 만한 기업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자동차책임보험을 유지하여야 한다. 공급자가 가입한 보험이 일차적이며, MEMC가 가입한 보험은 추가적인 것으로서 분담액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
- B. 공급자는 법령에 따라 법률상 요구되는 금액을 보상하는 산업 재해보상보험(Workers Compensation) 및 사고당 USD\$1,000,000.00를 보상하는 사용자책임보험을 유지하여야 한다.
- C. 공급자가 물품과 관련하여 MEMC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공급자는 최소 USD\$1,000,000를 책임한도로

하는 전문직책임보험(오류 및 누락부분에 관한 보상 포함)을 유지하여야 한다.

### 13. 법률 및 규정 준수

- A. 공급자는 물품의 생산, 운송, 수출 및 또는 판매를 규제하는 모든 행위의 EICC 코드와 모든국가, 주, 지방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모든 국가, 주, 지방의 환경, 안전, 보건, 노동 및 윤리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급자 및 그 회사에서는 관련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미국정부 또는 정부기관에서 수출면허 또는 정부승인을 요구하는 나라에 기술데이터, 프로세스, 제품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통제된 국가에서 온 외국인에게 통제된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수출/재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공급자는 탄탈(Ta), 주석(Sn), 텅스텐(W) 그리고 금(Au) 을 포함하여 분쟁지역으로부터 생산되는 광물(콩고민주공화국, DRC 또는 이에 인접한 곳에 있는 무장단체에 직간접적으로 이로울 수 있는 광물)을 사용한 자재를 MEMC 에 공급하지 않으며, 공급자는 해당 2 차공급자에 이와 관련된 규정을 통보하고, 해당 2 차 공급자가 통보된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할 책임을 갖는다. MEMC 는 본 규정 에 대한 공급자의 준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 B. 공급자가 MEMC 의 사업장에서 용역을 제공하거나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 공급자는 MEMC 의 모든 안전, 보안 규정 및 관련 법률에 따른 안전규제를 준수하고, MEMC 가 요구하는 최저한도의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빙하여야 한다. 공급자 및 그 양수인, 직원, 대표자, 하수급인, 대리인들은 감독권을 가진 MEMC 직원의 지시에 따르고 MEMC 의 영업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상기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MEMC 의 선택에 따라, 해지사유가 있는 주문서의 취소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 C. 공급자는 해외부패행법("FCPA")의 반부패 및 장부, 기록 조항, OECD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 방지를 위한 협약 ("OECD 협약")의 원칙, 뇌물수수 및 유사한 비윤리적인 사업관행을 금지하는 지역의 법률 및 MEMC 의 해외부패방지 성명서(Foreign Anti-Corruption Policy Statement and Policy)("MEMC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본 계약에서 예정하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FCPA, OECD 협약, 지역법, MEMC 지침에 위반하여 금품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공여, 제공, 약속하거나 승인하지 않았음을 진술, 보증한다. 공급자는 또한 자신이 외국공무원(외국정부, 부서, 정부가 소유, 지배, 운영하는 기업, 국제적 공공기관, 정당, 외국 정치적 후보자의 임원, 직원, 대표자 포함)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본 조에서 금지하는 공여, 제공, 약속, 승인은 본 계약의 중대한 위반행위로서 MEMC 는 그 단독적 재량으로 공급자에게 서면통지하고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공급자는 FCPA,

OECD 협약, 지역법을 위반한 결과로 부담하는 금전적 손해에 관해 MEMC 를 면책하고, 나아가 FCPA 나 지역법의 위반으로 부담하는 모든 책임에 관해 MEMC 를 면책한다. 공급자는 FCPA 의 장부 및 기록조항, OECD 협약, 본 조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MEMC 에게 장부 및 기록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합리적인 접근권을 부여한다.

### 14. 일반적 면책

공급자는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도내에서, 추후 MEMC 에게 발생되거나, MEMC 가 책임지거나, 사망, 상해(신체적 상해 포함), 재산의 파괴, 손해, 환경의 오염, 부작용 및 관련 제거 비용, 법률, 정부 규제, 명령의 위반의 결과로 MEMC 가 부담하게 될 수 있는, 공급자, 그 직원, 임원, 대리인, 대표자, 하수급인들의 부주의하거나 고의적인 행동, 오류, 부작위 또는 물품의 위험한 하자에 기인한, 모든 청구, 채무, 요구, 제재, 몰수, 소송, 판결 및 관련 비용(합리적인 범위 내의 변호사 비용 포함)으로부터 MEMC 를 보호, 방어, 면책한다.

### 15. 당사자간의 관계

본 조건상 당사자의 관계는 독립적인 계약자 관계이다. 주문서에 기재된 어떤 내용도 당사자간의 고용, 동업, 합작, 대리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16. 소유권 및 임치에 관한 책임

- A. MEMC 가 제공하거나 그 대금을 지급한 모든 사양, 설계, 도해, 기술정보, 자료, 도구, 디스크, 패턴, 마스크, 게이지, 시험장비 및 기타 재료는: (i) 비밀로 유지되고; (ii) MEMC 의 자산이 되며; (iii) MEMC 의 주문을 위해서만 공급자가 사용하여야 하고; (iv) 사용하지 않을 때 MEMC 의 자산임이 명백하게 표시되고, 분리되어야 하며; (v) 공급자의 비용으로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고; (vi) 요청시 MEMC 에게 즉시 배송되어야 한다.
- B. 공급자는 MEMC 의 자산을 보존하며 통상적인 마모를 제외하고 공급자의 점유하에 있는 동안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한다.

### 17. 개발물 및 지적재산

- A. 공급자는 본 조건의 규정과 상충되거나 공급자의 본 조건이행 또는 개발에 관한 MEMC 의 독점적인 권리(아래 정의함)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의무를 부담하지 않았음을 진술하고 보증하며, 물품의 공급기간 동안 본 조건과 상충되는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 B. 공급자는 본 조건에 따라 MEMC 의 물품 개발과정에서 단독적으로 또는 타자와 함께, 창출, 발견된 모든 저작권, 발명, 개조, 개발, 발견 및 이에 포함된 특허, 저작권, 영업비밀, 상표 및 기타 지적재산권(통칭하여, "개발물")은 MEMC 의

단독 재산임에 동의한다. 공급자는 모든 개발물을 MEMC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며(또는 양도하도록 하거나), 이에 모든 개발을 완전하게 양도한다.

- C. 공급자는 MEMC의 비용으로, MEMC가 개발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도록 MEMC 또는 그 지명인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한다는데 합의하며, 이에 관련 모든 정보, 자료의 공개 및 신청, 사양, 선언, 양도문서 및 MEMC가 해당 권리를 신청하고, 이를 취득하며, MEMC, 그 승계인, 양수인, 지명인에게 개발에 관한 단독적이고 배타적인 권리, 권한, 이익을 양도하고 이전하는데 필요한 모든 문서에 서명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나아가 공급자는 개발물에 관한 MEMC의 독점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기타 소유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MEMC를 지원할 것을 동의한다.
- D. MEMC는 공급자가 소유하는 발명, 개조, 개발, 관념, 발견 기타 독점적 정보 ("공급자 IP")에 관하여 공급자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소유권 및 이를 무제한적으로 라이선스할 권리를 보유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한다. 전술한 규정에 불구하고, 공급자가 물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본 조건에 따라 개발된 개발물에 공급자 IP를 포함시키는 경우, 공급자 IP에 근거하여 이러한 발명, 개조, 개발, 관념,

발견 기타 독점적 정보를 개발물의 일부로서, 또는 이와 관련하여 제작 (또는 제작하도록 하거나), 수입, 파생물 제작, 복제, 시연, 전시, 판매제공, 판매, 공급할 수 있으며, 라이선스의 재허여가능한 권리를 포함한, 비독점적, 무로열티의, 영구적이고 취소불가능한, 전세계적인 라이선스를 MEMC에게 부여한다.

- E. 공급자는 MEMC에게 통지하고, 그 사전서면 승인을 받지 않고, 제 3자의 지적재산을 개발물이나 본 조건에 따라 제공되는 배송물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을 진술, 보증, 동의한다.
- F. 공급자는 공급자가 MEMC에게 양도하는 모든 발명, 자료, 배송물에 포함된 공급자 (또는 그 직원)의 저자식별권, 수정 제한 등의 모든 저작권권을 포기한다.
- G. 공급자는 다음 사항을 보증한다: (1) 본 조건에 따른 작업을 이행하는 모든 직원, 계약상대방은 그들이 수행하는 작업이 본 조건 제 17조의 규정에 부합함을 보장하는 서면계약을 공급자와 체결함; 및 (2) MEMC의 사전서면 동의없이 MEMC에게 제공하는 배송물에 제 17조에 따라 MEMC에게 양도하거나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없는 지적재산을 포함하는 개발물을 포함시키지 아니함.